

## 협착사고

# 세탁물 건조기 롤에 협착



### 1. 재해발생경위

경기도 소재 ○○작업장에서 세탁물 건조기에 세탁물을 올려 놓던 중 작업자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가 회전하는 롤과 평벨트 사이에 끼이면서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.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근로자 작업복 불량
- 나. 비상정지장치 미설치
- 다. 안전덮개 미설치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작업복의 단정한 착용

세탁실 내에는 세탁기, 탈수기, 세탁물 건조기 등 회전체로 인한 협착위험이 있는 설비가 대부분이므로 세탁실 작업자는 목도리, 스카프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옷소매 등을 단정하게 하여야 함.

#### 나. 비상정지장치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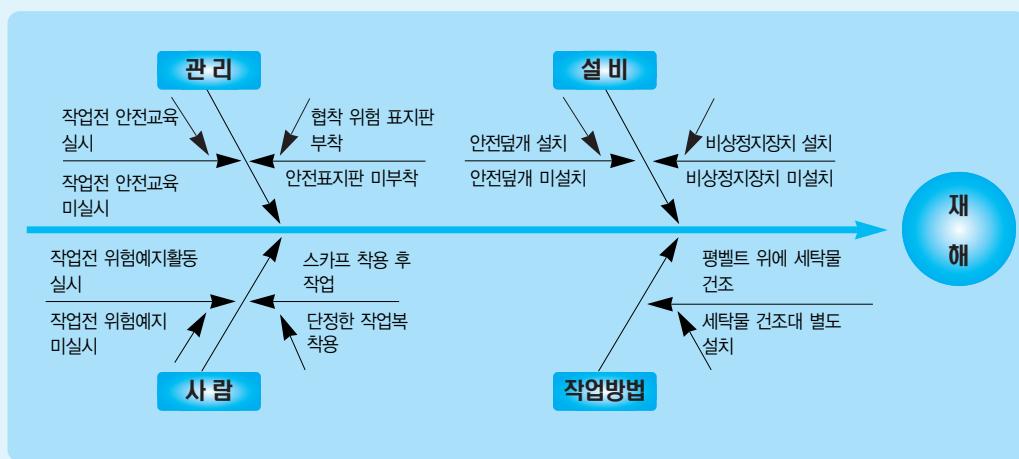
근로자의 작업복 또는 신체의 일부가 회전 롤과 평벨트 사이에 협착되는 경우, 협착된 근로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로프 등을 설치하여 세탁물 건조기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함.

#### 다. 안전덮개 설치

회전 롤과 평벨트 사이에 협착 위험이 있는 부분은 작업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, 세탁물을 평벨트 위에 올려놓지 말고 세탁물 건조대를 설치하여 정해진 위치에 놓도록 함.

### 4. 법 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협착사고

# 숏크리트 전송라인 스크류부 청소작업 중 발목 협착



### 1. 재해발생경위

서울 ○○ 철도공사 현장에서 배쳐플랜트의 쏫크리트 수평 전송라인인 스크류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스크류에 오른쪽 발이 협착·절단되어 사망한 재해임.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스크류 등 기계기구 가동 상태에서 청소작업
- 나. 방호덮개 미설치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기계기구 정지 후 청소작업 실시

스크류 등 기계장치 부위를 청소하거나 정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을 정지시키고 스위치 등에 시건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.

#### 나.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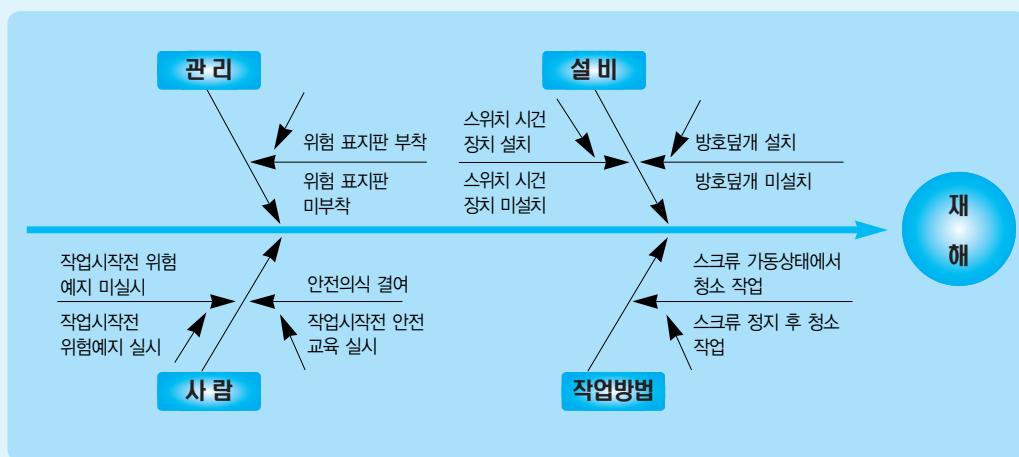
작업여건상 기계기구를 가동해야 할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와의 접촉을 예방하고, 덮개를 개방할 경우 기계가 멈추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.

#### 다. 작업시작전 안전교육

청소 및 정비작업 시작 전에 작업 상태에 대한 위험요소를 미리 숙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.

### 4. 법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붕괴사고

## 굴착작업 중 토사붕괴로 인한 재해

**1. 재해발생경위**

서울 ○○증축공사 현장에서 굴착 및 부지 정지작업 도중 피재자가 굴착사면 아래 지면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굴삭기 운전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순간, 수직으로 굴착한 벽면 상부가 붕괴되면서 무너지는 토사에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.

**2. 재해발생요인**

- 가. 안전한 굴착 기울기 미확보
- 나. 피재자 작업지시 위치 부적절
- 다.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안전한 굴착 기울기 확보

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 종류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의 기울기(풍화암 1 : 0.8)를 확보하여 지반 붕괴를 예방하여야 함.

#### 나. 흙막이 가시설 설치

붕괴 위험이 있는 지반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나 부득이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지반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.

#### 다. 위험한 지역에 출입 금지

안전한 굴착면이 확보되지 않은 굴착사면 아래에는 토사 붕괴 시 중대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.

### 4. 법 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